## 미납부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

기타 어떤 정책이나 규칙에도 불구하고, 본 미납부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은 여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미납부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과 다른 정책 또는 규칙이 상충할 경우에는 본 정책이 우선합니다.

본 정책의 목적상 "공급자"라는 용어는 노워크시 수도 시스템(City of Norwalk Municipal Water System)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비자"라는 용어는 수도 서비스 주소지의 계정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I. <u>정책 적용, 연락처 전화번호</u>: 본 정책은 미납부로 인한 수도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수도 요금 납부에 관해 그리고 본 정책에 명시된 서비스 중단 예방법 설정에 관해 추가 지원을 받으시려면 (562) 929-5766 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Ⅱ. 미납부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 A. <u>조정 및 청구서 납부</u>: 요금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도 서비스 청구서는 2 개월마다 한 번씩 각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서비스 청구서는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하고, 청구일로부터 육십(60) 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 초과로 인해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자동 은행 이체나 노워크시 (City of Norwalk)의 온라인 및 전화 요금 납부 시스템, 우편으로 하거나 또는 직접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납부가 12700 Norwalk Blvd. Room 5, Norwalk, CA 90650 로 제때에 수령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구서 요금 산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기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여 정기적 청구서에 적용하거나 청구서의 개설과 마감에 따라 필요한 대로 적용합니다.
  - 2. 계량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에는 청구서가 작성되는 현재 및 이전 계량기 측정 기간에 대한 계량기 측정값과 현재 계량기 수치의 단위 수, 날짜 및 서비스 일수가 표시됩니다.
  - 3. 청구서는 미합중국의 법정 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기술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그러한 청구서 요금을 동전으로 납부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B. <u>미납 청구서</u>: 다음 규칙은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육십(60)일 넘게 미납된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 1. <u>미납 통지서</u>: 청구된 날짜로부터 사십오(45) 일째 되는 날 또는 그이전에 청구된 청구서에 대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미납 통지서("연체 통지서")가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가능한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약 7 일 이내에 수도 서비스 이용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소비자의 주소가 서비스를 받는 건물의 주소가 아닌경우, 연체 통지서도 "입주자"라고 명시된 서비스를 받는 건물의 주소로발송되어야 합니다. 연체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소비자의 성명 및 주소,
- b) 연체 금액,
- c)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이뤄져야 할 납부 기한 또는 납부 약정일,
- d) 미납액 납부 시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아래의 III(D)항 참조),
- e) 연체가 발생한 청구서의 검토 및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아래의 IV 항 참조) 및
- f) 소비자가 연기, 할부 상환, 감액 또는 대체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아래의 III 항 참조).

공급자는 전화로 서비스 중단이 임박했음을 소비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전화로 제공될 경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본 정책의 사본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아래의 III 항에 기술된 대체 납부 옵션과 아래의 IV 항에 기술된 소비자 청구서의 검토 및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해소비자와 논의할 것을 제안해야합니다.

- 2. <u>소비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u>: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서면 통지(예: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수취 불가로 반송됨) 또는 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성실히 해당 거주지를 방문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방문 사실과 다른 날 약속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미납부로 인해 임박한 서비스 중단 통지를 전달하고, 본 정책의 사본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 3. <u>연체료</u>: 공급자의 요금 및 청구 일정에 명시된 연체료는 연체 통지서가 생성되기 전에 해당 계정에 대한 미납액이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 계정의 미납 잔액에 평가 및 추가됩니다.
- 4. <u>서비스 중단 기한</u>: 수도 서비스 요금 납부는 연체 통지서에 명시된 날 오후 5 시 전까지 공급자 사무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편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5. <u>부도 수표의 고지</u>: 수도 또는 기타 요금에 대한 납부에 대해 부도 수표를 수령한 공급자는 해당 계정에서 납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해당 거주지에 수도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남기게 됩니다. 서비스 중단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기한은 연체 통지서에 지정된 날짜보다 앞서지 않아야 함)까지 부도 수표의 금액 및 부도 수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도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연체 통지서가 이전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부도 수표로 납부된 청구서가 발행된지 달력일로 육십(60) 일이 지났을 경우에도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부도

수표를 회수하고 부도 수표 요금을 상환하려면, 모든 금액은 현금 또는 인증된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6.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해제를 위해 사용된 부도 수표:
  - a) 미납부로 인해 연결 중단된 계정에 서비스를 복구하고자 제출하여 접수된 수표가 지급불가로 반환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달력일로 최소 삼(3)일의 서면 통지 후 해당 수도 서비스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의 계정은 현금 또는 인증된 자금의 형태로 미납액을 내야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계정이 복구되면, 일년 동안 해당 계정에 소비자가 지급불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깃발이 표시됩니다.
  - b) 앞서 설명한 일년의 기간 내에 언제든 소비자의 계정이 미납부로 인해 공급이 다시 끊어질 경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수도 서비스를 복원하려면 현금 또는 인증된 자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 <u>서비스 중단 금지 조건</u>: 공급자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수도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1. <u>건강 상태</u>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입주자가 수도 서비스의 중단이 (i)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는 (ii) 건물에 거주하는 자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일차 의료 공급자의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 2. 지급 불능 소비자가 수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서 수도 서비스에 대해 재정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입증했을 경우. 소비자의 가구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소비자는 "지급 불가"하다고 인정됩니다. (I) 현재 다음 혜택을 받을 경우: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SSI/주 보조 납부 프로그램(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또는 (ii) 소비자의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 입증되었을 경우(캘리포니아의 해당 연방 빈곤 수준은 다음 링크 참조: <a href="https://www.healthforcalifornia.com/covered-california/income-limits">https://www.healthforcalifornia.com/covered-california/income-limits)</a>) 및
  - 3. <u>대체 납부 약속</u> 소비자는 아래 III 항의 규정에 따라 할부 상환 계약, 대체 납부 일정 또는 연기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기꺼이 체결하게 됩니다.
- D.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조건 결정 절차: 상기 하위절(C)에 기술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공급자가 소비자의 지원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려면,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하위절 (C) (1)항에 따른 의료 문제, 하위절 (C)(2)항에 따른 지급 불능 사실 및 가능한 한 서비스 중단을 위해 제안된 모든 날짜 이전에 하위절 (C)(3)항에 따른 대체 납부 약정을 기꺼이 이행할 의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서를 수령한 공급자의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은

해당 문서를 검토하고 칠(7) 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답변을 주어 이용 가능한 대체 약정의 타당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아래의 III 항에 따라 대체 납부 약정 및 조건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추가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오(5) 일 이내에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오(5) 일 이내에 공급자는 소비자가 상기 하위절 (C)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또는 대체 납부 약속 및 공급자가 소비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아래 III 항에 따른 계약 및 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의 하위절 (C)항에 기술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자에게 낼 벌금 및 기타 요금을 포함한 연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i) 소비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급자의 결정에 대해 공급자로부터 받은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이(2) 일 또는 (ii) 연체 통지서에 명시된 임박한 서비스 중단 날짜.

- E. 저소득층 소비자를 위한 특별 규칙: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계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i) 고객의 가구가 현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경우: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SSI/주 보조 납부 프로그램(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또는 (ii) 소비자의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 입증되었을 경우(캘리포니아의 해당 연방 빈곤 수준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healthforcalifornia.com/covered-california/income-limits).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 1. <u>재연결 요금</u>: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연결되었을 경우, 공급자의 정상 근무 시간 동안의 재연결 비용은 \$50 를 초과할 수 없고, 근무 외 시간 동안의 재연결 비용은 \$15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요금은 해당 비용이 법정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 실제 재연결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상한선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로스앤젤레스-롱 비치-애나하임 도심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 <u>이자 부과 금지</u>: 제공자는 연체 청구서에 이자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 F. <u>임대차인 시나리오</u>: 아래의 절차는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기록 고객이고 수도 요금 납부의 책임을 지는 개별 계량형 단독 주택, 다세대 건축물 및 이동 주택 단지에 적용됩니다.

## 1. <u>필수 고지 사항</u>:

- a. 건물이 다세대 건축물 또는 이동 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10 일전, 또는 건물이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7 일 전,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에 한하여, 공급자는 성실히 수도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입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b. 이 서면 통지는 세입자/입주자에게 자신들이 연체액 납부부담을 지지 않고 서비스 청구서를 받을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아래의 하위절 2 항 참조).

## 2. 세입자/입주자의 고객 승격:

- a.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공급자의 요구 사항 및 규칙을 충족하는 데 비협조적인 세입자/입주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b. 단, (i) 세입자/입주자 중 한 명 이상이 공급자가 만족할때까지 계정에 대한 후속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진다거나 또는 (ii) 공급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세입자/입주자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단할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한세입자/입주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 특정 기간 동안의 이전 서비스가 공급자와의 신용을 세우는 조건인 경우,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공급자가 만족하는 선까지 임대료를 즉시 납부한 증거는 만족스러운 수준에 해당됩니다.
- d. 세입자/입주자가 공급자의 고객이 되고 세입자/입주자의임대료에 해당 요금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수도 서비스 요금이포함되었을 경우, 세입자/입주자는 향후임대료에서 이전 납부기간 동안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타당한 금액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III. 대체 납부 약속: 상기 II(C)항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상기 II(D)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공급자가 선택한 다음 대체 납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i) 아래의 하위절 (A)항에 따른 미납 잔액의 할부 상환, (ii) 아래의 하위절 (B)항에 따른 대체 납부 일정, (iii) 아래 하위절 (C)항에 따른 미납 잔액의 일부 또는 전액 하향 조정, 또는 (iv) 아래의 하위절 (D)항에 따른 일시적 납부 연기. 총괄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은 타당한 재량에 따라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및 문서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재무 상황 및 공급자의 납부 요구를 고려한 후 가장 적절한 대체 납부 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 A. <u>할부 상환</u>: 정상 납부 기간 내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고 공급자가 확인한 대로 상기 II(C)항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공급자가 이 대안을 선택한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할부 상환 계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1. <u>기간</u>: 소비자는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이 결정한 육십(6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래의 하위절 (2)항에 명시된 관리 수수료 및 이자와 함께 미납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은 본인들의 타당한 재량에 따라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육십(60) 일 이상의 할부 상환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잔액은 적용 가능한 관리 수수료 및 적용되는 이자와 함께 할부 상환 기간의 월 수로 나눠지고, 그 금액은 매달 소비자의 수도 서비스 청구서에 추가됩니다.
  - 2. 계획 준수: 소비자는 할부 상환 계획을 준수해야 하고 이후의 각 청구기간에 요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할부 상환 계획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면서 이후의 미납청구액에 대해 추가 할부 상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달력일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할부 상환 계획에 대한 조건을 준수하지않았거나, 달력일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소비자의 현재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자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최종 통지를소비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게시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최소 오(5) 일 지난후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B. <u>대체 납부 일정</u>: 정상 납부 기간 내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는 누구나 공급자가 이 대안을 선택한 경우 다음에 따라 미납 잔액에 대한 대체 납부 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1. <u>상환 기간</u>: 소비자는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이 결정한 육십(6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은 본인들의 타당한 재량에 따라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육십(60) 일 이상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u>일정 수립</u>: 소비자와 상의하고 소비자의 재정적 한도를 고려한 후,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은 소비자와 합의할 대체 납부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대체 일정은 정해진 납부일과 겹치지 않는 정기 일시불 납부를 허용하거나, 월 단위보다 더 자주 납부를 허용하거나, 월 단위보다 덜 자주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든 상기 하위절 (1)항에 따라 미납 잔액 및 관리 수수료는 납부 일정 수립 후 육십(60) 일 이내에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합의된 일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 3. 계획 준수: 소비자는 합의된 납부 일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후의 각청구기간에 요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면서 이후의 미납청구액에 대해 더 긴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달력일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합의된 일정에 대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달력일기준으로 육십(60) 일 이상 소비자의 현재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않았을 경우, 공급자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최종 통지를 소비자가거주하는 건물에 게시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최소 오(5) 일 지난 후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C. <u>일시적 납부 연기</u>: 정상 납부 기간 내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소비자는 누구나 공급자가 이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달력일 기준으로 최대 육십(60) 일 동안 미납 잔액의 납부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는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허용된 연기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 1. <u>상환 기간</u>: 소비자는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이 결정한 연기일("연기된 납부일")까지 미납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기된 납부일은 미납 잔액이 연체된 날로부터 육십(60) 일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단,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은 본인들의 타당한 재량에 따라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육십(60) 일을 초과하는 연기된 납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IV. <u>이의 제기</u>: 수도 서비스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는 이의 제기가 거부되더라도 십이(12) 개월 동안 삼(3) 회까지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제한을 넘었을 경우 공급자는 해당 소비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어떤 이의 제기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A. <u>최초 이의 제기</u>: 수도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십(10) 일 이내에 소비자는 청구서나 요금에 대해 이의 제기 또는 검토 요청에 착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급자 사무소로 전달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이의 제기와 그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 B. <u>연체 통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u>: 상기 하위절 A 항에 따라 제공된 이의 제기 권리 외에, 연체 통지서를 받은 소비자가 청구서에 명시된 수도 소비량과 관련하여 청구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연체 통지서와 관련된 청구서에 대하여 연체 통지서 날짜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오(5) 일 이내에 이의 제기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하위절 A 항에 따라 이의 또는 검토 요청이 제기된 모든 청구서에는 그러한 이의 제기 또는 검토에 대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하위절 B 항에 따른 모든 이의 제기 또는 검토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는 문서 또는 검토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또는 검토 요청은 근무일 기준으로 오(5) 일 이내에 공급자 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이의 제기와 그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 C. 이의 제기 심리: 상기 하위절 A 항 또는 B 항에 따라 이의 제기 또는 검토 요청 접수가 이뤄진 후, 심리 날짜를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대리인("청문관") 앞에서 즉시 설정해야 합니다. 청문관은 소비자가 제공한 증거와 해당 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대해 제출한 파일 정보를 평가한 후 청구서에 명시된 수도 요금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판단에 대한 간단한 서면 요약과 함께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 1. 수도 요금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공급자는 수정된 청구서를 제공하고 수정된 요금의 납부 기한은 수정된 요금의 청구서 날짜로부터 십(10) 일 이내가 됩니다. 수정된 요금이 수정된 청구서가 제공된 날로부터 육십(60) 일이 지나도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육십(60) 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정규 근무일부터 수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단, 공급자는 상기 II(B)(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연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도 서비스는 미납 수도 요금, 수수료 및 모든 해당되는 재연결 요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만 복원됩니다.
  - 2. (a) 문제의 수도 요금이 올바르다고 판단될 경우, 수도 요금은 청문관의 결정이 내려진 후 근무일 기준 이(2)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소비자는 이사회에 이의를 추가로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의 제기는 어떤 것이든 상기 하위절 A 항에 따라 이의 제기 또는 검토가 최초 이의 제기인 경우 청문관의 결정이 내려진 후 칠(7) 일 이내에 또는 이의 제기 또는 검토가 상기 하위절 B 항에 따라 연체 통지서인 경우에는 삼(3)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심리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그 이후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이뤄집니다.
  - (b) 상기 하위절 A 항에 의거한 최초 이의 제기에 대해, 소비자가 이사회에 제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수도 요금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요금이 원래 청구일로부터 육십(60) 일 이내에 전액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자는 상기 II(B)(1)항에 따라 연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건물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조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c) 상기 하위절 B 항에 따른 연체 통지서에 대해, 소비자가 이사회에 제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수도 서비스는 다음중 후자가 발생한 지 적어도 이십사(24) 시간 후에 해당 소비자에 대한 서면 또는 전화 통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I) 연체 통지서에 명시된 원래의육십(60) 일 통지 기간의 만료 또는 (ii) 이의 제기 기간의 만료.

- 3. 이사회 전에 심리를 요청할 경우, 그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뤄지고 공급자 사무소에 전달돼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사회에 직접 출두해야 하고 해당 청구서의 수도 요금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소비자가 제시한 증거와 문제의 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대해 제출한 정보를 평가하고 해당 요금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a) 이사회가 문제의 수도 요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비자는 수정된 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받습니다. 수정된 요금이 수정된 청구서가 제공된 날로부터 육십(60) 일이 지나도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육십(60) 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정규 근무일부터 수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단, 공급자는 상기 II(B)(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연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도 서비스는 미납 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모든 관련 재연결 요금이 모두 납부된 후에만 복원됩니다.
  - b) 문제의 수도 요금이 올바르다고 판명된 경우, 수도 요금은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근무일 기준으로 이(2)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요금이 원래 청구일로부터 육십(60) 일이내에 전액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자는 상기 II(B)(1)항에 따라연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건물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 조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c) 과다 청구액은 이사회의 단독 재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정기 청구서에 크레딧으로 반영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됩니다.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도 서비스는 공급자 또는 이사회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 중단할 수 없습니다.
  - e)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 V. <u>서비스의 복구</u>: 미납부로 인해 중단되었던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계속하려면, 소비자는 상기 II(E)(1)항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공급자가 설정한 보증금과 기타 관련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그러한 재연결을 완료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공급자는 소비자의 요청 및 해당 요금 납부 후 다음 정규 근무일이 끝날 때까지 재연결을 수행해야 합니다.